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 가 정 보 화 기 본 법 시 행 규 칙
전 부 개 정 령 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 월 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웹 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함.

나. 정보문화 사업 지원 대상을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의 사업으로 변경함(제2조)

다.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및 지정, 시험평가 신청 및 시험평가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3조 및 제4조)

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및 지정, 품질인증의 신청 및 인증 관련 서식과 제출서류,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 등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마. 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시 최근 2년간의 개발 실적이 없어도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를 삭제함(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문화 사업 지원 신청 및 절차)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에 따라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3.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파급 효과, 필요 비용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4.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과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활동 또는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려면, 그 지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평가인력 학력 및 경력 사본,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가 표기된

사무 및 시험평가 공간 평면도, 설비 목록서 및 설비관리대장 등)

4.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5. 영 제35조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요건 확인을 위해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①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36조제1항의 검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시험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

근성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지정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영 제3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품질인증업무 수행규정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교육 등 수행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지정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격차해소사업 지원 신청)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또는 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및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당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 지원 범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작성요령 (제3조제2항제2호 관련)

1. 일반현황

- 가. 법인명: 한글 및 영문 명칭을 적는다.
- 나. 대표자: 한글, 한자 및 영문 이름을 적는다.
- 다. 소재지: 주된 영업소의 주소(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을 포함)를 적는다.
- 라. 설립 및 등기일자
- 마. 자본금

2. 기관소개

- 가. 설립목적 및 연혁
- 나. 비전 및 목표
- 다. 주요업무: 정관에서 정한 주요 업무내용을 적는다.
- 라. 조직 및 인력현황: 조직을 도식화하여 부서별 기능을 기술하고, 임·직원, 시험 인력 등으로 구분하여 이름, 직위, 생년월일, 경력, 자격 및 주요업무내용 등을 적는다.

3.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업무 추진계획

- 가. 추진목적
- 나. 추진전략
- 다. 주요 추진내용
 - 1) 시험평가업무 추진조직 운영방안: 시험평가시험 문의·접수·처리, 결과서 제공, 시험평가실시, 시험평가결과 분석·관리 등을 위한 행정, 시험평가 절차서, 관리조직의 운영방안을 적는다.
 - 2) 시험평가자 인력 확보방안: 시험평가 수행을 위한 인력의 확보방안을 적는다.
 - 3) 시험평가 운영·관리방안: 신청인의 등록·관리, 결과의 심의, 시험평가 비용, 시험평가서 발급·관리, 시험 결과 기록의 유지·관리 등 시험평가 운영·관리 사항을 적는다.
- 마. 기대효과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신청 기관 또는 단체의 소개서 1부 3. 사업계획서(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파급 효과, 필요 비용, 지원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4. 정보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등과 관련된 활동 또는 사업 실적에 관한 서류(해당 활동 또는 사업 실적이 있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서 작성	지원계획 공고 ↓ 접수 ↓ 심사 ↓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심사결과 통지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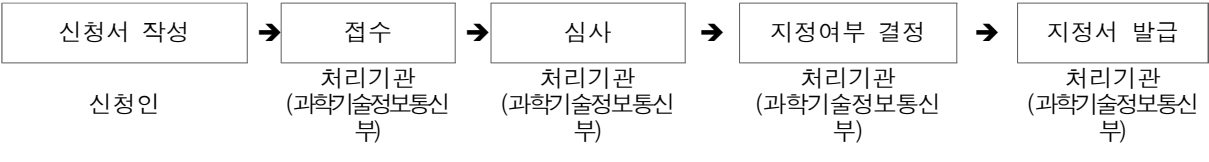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기관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시험평가인력 학력 및 경력 사본 1부,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가 표기된 사무 및 시험평가 공간 평면도 1부, 설비 목록서 및 설비관리대장 각 1부 등) 4.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5. 영 제35조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요건 확인을 위해 시험평가기관 지정 신청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지정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업체(기관)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업종형태	제조사 [] 수입자[]	판매자[]	
	실 무 책 임 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제조사	업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 명	부 서	직 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신청제품 (필요 시 별지 사용)	시험평가 분야			
	제품명			
	모델명			
	시험평가 신청제품 처리방법		반환[] 폐기[]	
	시험평가 신청제품 제출		시험평가 신청 제품 1식 []	
	접근성 기능 설명			
	1. 인식의 용이성(제품이 시각·청각 등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것)			
	해당 제품 기능			
	2. 운용의 용이성(시각·청각 장애인 등 사용자가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해당 제품 기능			
	3. 이해의 용이성(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해당 제품 기능			
4. 견고성(제품은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해당 제품 기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능정보 제품 접근성 시험평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또는 대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시험평가기관의 장 귀하

제출물	1. 시험평가 신청제품 2. 제품설명서 3. 사용자취급설명서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시험평가 수행 처리기관 (시험평가기관)	·	시험평가서 발급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서(표지)

시험평가분류코드-2020-001

페이지(1) / (총 N) 페이지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서
<신청기관명>

제품명칭	기본모델명
------	-------

0000년 00월 00일

시험평가기관명

본 문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우선 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기준에 따른 결과서로 <시험평가기관명>의 사전승인 없이는 문서의 일부분만을 발췌하거나 인용하여 사용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시험평가서(목차)

시험평가분류코드-2020-001

페이지(2) / (총 N) 페이지

< 목 차 >

1. 시험평가 개요
2. 신청기관 정보
3. 시험평가 일정
4. 시험평가 제품 및 환경 구성 소개
5. 시험평가 기준 소개
6. 시험평가 시험항목

※ 시험항목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의 [별표3] 정보 접근성 관련 세부 기술표준을 준용

7. 시험평가 결과
8. 특이사항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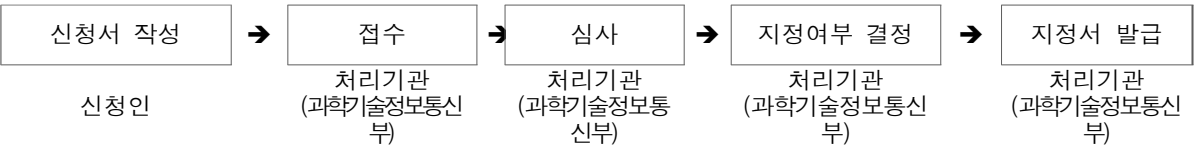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영 제3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품질인증업무 수행규정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컨설팅, 교육 등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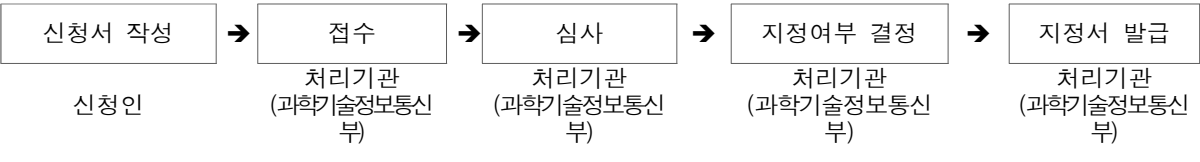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영 제38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품질인증업무 수행규정 5. 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편의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 교육 등 수행실적 및 증빙자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제 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웹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갱신 30아내, 신규 60일 이내	
신청인	업체(기관)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부 서	직 위
			전자우편	
개발(운영) 업체	업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부 서	직 위
			전자우편	
신 청 웹사이트	웹사이트 주소			
	인증신청의 구분		[] 최초	
			[] 갱신	기존 인증 유효기간(00.00.00~00.00.00)
	품질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처리기관 (인증기관)	→ 협의 처리기관 (인증기관)
	→ 인증심사 처리기관 (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처리기관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갱신 30이내, 신규 60일 이내	
신청인	업체(기관)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책 임 자	성 명 전화번호		부 서		직 위	
			전자우편				
개발(운영) 업체	업체명			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부 서		직 위	
			전자우편				
신 청 응 용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명칭						
	인증신청의 구분		[] 최초		기존 인증 유효기간(00.00.00~00.00.00)		
			[] 갱신				
품질인증의 범위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인증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 호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웹사이트 주소:
5. 유효기간:
6. 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웹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웹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제 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접근성 품질인증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명:
5. 유효기간:
6. 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장

직인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콘텐츠·기술 개발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한	60일	
지원사업 분야				
과제명				
사업자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		
	홈페이지			
	연락처	전화:	이메일:	
개발책임자	부서/직위	성 명		
	연락처	전화:	이메일:	
총 연구기간	. . ~ . . (개월)			
해당 연도	. . ~ . . (개월)			
연구기간				
참여인력(M/Y)	총 : 명(M/Y) 해당 연도: 명(M/Y)			
연구개발비	총 연구개발비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합계				
보조 사업자 (*공동개발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기관명	개발책임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사업자 등록번호
위탁사업자			전화: 이메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콘텐츠·기술) 개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콘텐츠 또는 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하려는 자에 한함)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청서 작성	지원계획 공고
	접수
	심사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심사결과 통지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연 락 처	044-202-6275